

IV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과세소득 작성

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상 『과세소득』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월급여의 합계액을 의미하므로, 근로소득 공제액(일 15만원) 차감전 금액을 작성합니다.

V 용역제공대가 기재

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 작성 시 용역제공대가는 용역제공자가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월간 총수입금액을 기재합니다.

VI 소득자 주민등록번호 기재

소득자료는 고용보험 등 복지행정 업무에 활용되므로,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.

VII 소득자료 미·과소 제출 유의

소득자료(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, 간이지급명세서)를 미제출하거나,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지급액에 비해 소득자료 지급액이 과소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VIII 소득자료 착오 제출 유의

용역을 제공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소득자의 소득자료(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, 간이지급명세서)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(예시) 소득자가 병역복무자, 사망자, 대표자 본인 등



홈택스 제출방법
따라하기 동영상



손택스 제출방법
따라하기 동영상

QR코드를 스캔하시면
홈택스 또는 손택스 제출방법을
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모두가 행복한 세상!!
함께 만드는 RTI



검 색 창

실시간 소득파악 제도(RTI)



www.hometax.go.kr

국민의 국세청,
신뢰받는 국세행정

소득파악 제대로!
복지사각 제로로!
국민행복 대대로!

실시간 소득파악 제도

[소득자료 제출 Q&A]

[소득자료 제출시 유의할 사항]



국세청
National Tax Service

소득자료 제출시 유의할 사항

I 소득종류에 맞는 소득자료 제출

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자의 소득종류(일용근로소득·상용근로소득·인적용역 사업소득 등)에 맞는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.

(잘못된 제출) 식당주방보조원, 건설업종사자 등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기재하여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아닌 간이지급명세서(거주자의 사업소득)를 제출한 경우

II 인적용역 사업자의 정확한 업종코드 기재

업종코드를 잘못 기재하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 임에도 고용보험 혜택에서 누락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업종코드를 기재하여 간이지급명세서(거주자의 사업소득)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고용보험 적용대상 인적용역(14종):보험설계사, 학습지방문강사, 교육교구방문강사, 대출모집인, 신용카드회원모집인, 방문판매원, 대여제품방문점검원, 방과후강사, 대리운전, 퀵서비스, 캐디, 소프트웨어프리랜서, 관광통역안내사, 어린이통학버스기사

III 신설 업종코드 적용

세법상 인적용역 사업자 유형과 고용보험 적용대상 노무제공자 유형이 일치되도록 '21년 7월부터 업종코드를 분리·신설하였으니 이에 맞는 업종코드를 적용하여야 합니다.

※ 분리·신설 업종코드

연월	종 전		분리·신설	
	업 종	업종코드	업종	업종코드
'21.7월	방문 판매원	940908	방문판매원	940908
			학습지방문강사	940920
			교육교구방문강사	940921
			대여제품방문점검원	940922
	기타모집수당 채권회수수당	940911	기타모집수당	940911
			채권회수수당	940911
			대출모집인	940923
			신용카드회원모집인	940924
신 설		방과후강사	940925	
'22.7월	신 설	소프트웨어프리랜서	940926	
		관광통역안내사	940927	
		어린이통학버스기사	940928	

소득자료 제출 Q&A

I 공통항목

Q 소득자료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 일부 자료 누락을 확인한 경우 누락분만 추가 제출 가능한가요?

A 누락분만 제출 가능합니다.
· 직접작성 제출시 : 누락분 추가 입력 후 제출
· 변환방식 제출시 : 누락분만 추가한 자료 파일 생성 후 제출

Q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,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이내에 미제출하거나 소득자의 인적 사항이 잘못된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?

A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,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또는 불분명한 소득자료 제출에 따른 가산세 부담이 있습니다.

※ 미제출 등에 대한 가산세

- ① 미제출 : 지급액×0.25%(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(간이지급명세서(근로소득)의 경우 3개월) 이내 제출시 0.125%)
- ② 불성실 제출 : 지급액×0.25%
(불성실 제출 : 인적사항 등 오류, 소득종류 오류 등)

Q 기한후 제출·수정제출도 전자 파일로 제출이 가능한가요?

A 홈텍스 변환제출 방식으로 제출 가능합니다.

Q 휴·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, 간이지급명세서는 언제 제출하나요?

A 휴업·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.(간이지급명세서(근로소득)는 휴업·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)

II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

Q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지나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이 가능한가요?

A 제출기한이 지나서 제출은 가능하나, 제출기한 경과에 따른 가산세*를 부담하여야 합니다.
* 지급액의 0.25%(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시 0.125%)

Q 일용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언제부터 상용근로자로 보나요? 연말정산은 어느 시점부터 하면 되나요?

A 3개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상용근로자로 보아 원천징수하며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연말정산 하는 것입니다.

Q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허위 제출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?

A 실제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자를 소득자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가산세(지급액의 0.25%)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Q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가산세는 어떻게 신고하나요?

A 개인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, 법인 사업자는 법인세 신고시 지급명세서 가산세란에 반영하여 신고·납부 하시면 됩니다.

Q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준은 근무월 인가요? 지급월 인가요?

A 지급월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.
(예시) 7월에 근로를 제공받고, 8월에 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
⇒ 지급월 8월에 "O"를 표시하고, 근무월에는 7월로 작성하여 9월말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.

III 간이지급명세서

Q 간이지급명세서(근로소득)도 매월 제출해야 되나요?

A 현행대로 반기별로 제출합니다. 다만, '24년 1월 지급분('24년 2월 제출분)부터는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.

Q 간이지급명세서(근로소득)를 매월 제출하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?

A 간이지급명세서(근로소득)는 연말정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는 별도로 제출하는 것입니다.

Q 간이지급명세서(거주자의 사업소득)를 매월 제출하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?

A '23.1.1. 이후 지급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분부터 간이지급명세서(매월)를 모두 제출 시 지급명세서(연 1회) 제출 면제됩니다.
* 다만,연말정산 사업소득은 모두 제출하여야 함

Q '22년 12월 근로·사업소득을 '23년 1월에 지급하는 경우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?

A 해당 귀속연도의 근로·연말정산 사업소득*을 12월 말일까지 미지급한 경우에는 12월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'23.1월 말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* 보험모집인, 방문판매원, 음료배달원

Q 소득자의 소득종류, 인적용역 사업자 업종코드를 잘못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?

A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복지혜택 누락 가능성이 있으며, 특히 소득종류가 잘못된 경우에는 가산세(지급액의 0.25%)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Q 인적용역 사업자 업종코드 또는 지급액을 잘못 기재하여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수정할 수 있나요?

A 아래 방법에 따라 업종코드 또는 지급액을 변경 신청하거나 허위제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.

※ 소득내역 확인 및 허위제출 신고 방법

- ① 홈텍스 ▶ 신청/제출 ▶ 복지이음 ▶ 본인소득내역확인·정정
- ② 국세청 누리집 ▶ 국민소통 ▶ 국세청100배활용하기 가이드맵 ▶ 지급명세서 미제출·허위제출 신고

IV 사업장제공자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

Q 사업자가 대가를 지급하여 원천징수 대상인 경우에도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?

A 대가를 지급하여 원천징수 대상인 경우에는 간이 지급명세서(거주자의 사업소득)를 제출해야 합니다.

Q 사업장제공자 등이 용역제공자의 용역제공대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?

A 용역제공대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용역제공대가를 제외한 용역제공자 인적사항, 용역제공기간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.

Q 제출기한이 지났는데도 제출이 가능한가요?

A 제출기한이 지나도 제출은 가능하나, 제출기한내에 제출하여야 세액공제*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.
*공제금액:용역제공자 인원수×300원(연간 200만원 한도)

Q 사업장제공자가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제공자에게 불이익이 있나요?

A '22년 1월 소득발생분(2월 제출분)부터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한 후 그 명령사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※ 시정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

- ① 소득자료 전부 미제출한 경우 : 제출명세서 건별 20만원
- ② 소득자료 일부 미제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: 제출명세서 건별 10만원

Q 플랫폼사업자를 통해 용역을 알선·중개한 경우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는 누가 제출해야 하나요?

A '22.1.1.(캐디용역은 '22.7.1.) 이후 플랫폼사업자를 통해 용역(대리운전·퀵서비스·캐디용역)을 알선·중개한 경우 플랫폼사업자가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.